

## 2016년 추가경정예산총칙

제1조 나오미요양원의 2017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

제2조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총액은 338,984,970원으로 한다.

구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		
	세입예산액	전년대비증감	세출예산액	전년대비증감
예산총액	338,984,970	▼26	338,984,970	▼26

제3조 세입·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순번	세 입		세 출	
	1	입소자부담금수입	53,473,420	사무비
2	사업수입	2,040,000	재산조성비	4,620,000
3	과년도수입	-	사업비	33,502,408
4	보조금수입	15,285,000	전출금	-
5	후원금수입	6,720,000	과년도지출금	-
6	장기요양급여수입	242,166,550	부채상환금	-
7	차입금	-	잡지출	61,546
8	전입금	-	예비비및기타(반환금)	270,000
9	이월금	19,000,000	적립금(운영충당금)	-
10	잡수입	300,000	준비금(환경개선금)	-
합 계		338,984,970	합 계	338,984,970

제4조 예산의 사업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, 지정후원금,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수입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사 회 복 지 법 인 함 계 하 는 마 을 나 오 미 요 양 원

